

■ 목 차

■ 소식 ■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공동주최로 미얀마 세미나 개최..... 3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중국업체를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상장 자문..... 4
 중국업체를 대리하여 한국 상장기업 인수 자문..... 4
 한국 화장품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진출 자문..... 5
 한국 물류업체의 중국법인을 대리하여 채권분쟁 소송..... 5
 한국 건축사무소를 대리하여 CM계약분쟁 소송..... 6
 상해 사무소, 대한무역진흥공사 서안대표처 법률고문으로 위촉..... 6
 상해 사무소, 요식업 중국합자법인 법률고문으로 위촉..... 7
[베트남] 롯데시네마를 대리하여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에 영화관 개관 자문..... 8
 롯데마트를 대리하여 호치민시 고밥 지점 개점 자문..... 8
 한국거래소의 베트남·인도네시아 기업 해외상장 법제 연구 용역 수행..... 9
[인도네시아] 한국거래소의 베트남·인도네시아 기업 해외상장 법제 연구 용역 수행..... 11
[캄보디아] KB금융을 대리하여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banking 사업 진출 관련 자문..... 12
 국내 IT 회사 캄보디아 자회사의 감사 관련 자문..... 12
[러시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딧 은행(KB국민은행 자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소재 'BCC-Moscow Bank LLC' 전체 지분 매각 자문..... 14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은행카드청산기구관리방법 시행..... 1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법원, 영문만으로 작성된 계약서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 승인 17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공상총국의 「엄중한 불법 및 신용불량 기업리스트 관리 잠행방법」 4월 1일부터 시행 21

사모투자펀드 모집행위관리방법 발표 21

최고인민법원 소비자 관련 공익소송 사법해석 발표 22

해외 비정부기구의 중국 경내 활동 관리법 제정 22

[베트남] 베트남 건설사 등급 분류 2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 등록 의무 절차에 관한 법무부 규정 발효 29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39/2016 발표 31

[일본] 일본 정부 성장전략 34

■ 소식 ■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공동주최로 미얀마 세미나 개최

지평은 지난 4월 11일 미얀마 진출 희망기업 임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공동주최로 미얀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미얀마 시장개척 핵심 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지평 정철 변호사는 '최근 미얀마 법률 이슈'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부동산 들썩이는 미얀마...외식·건설업 뜬다\(2016. 4. 11.\)](#)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중국업체를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상장 자문

지평은 중국업체를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상장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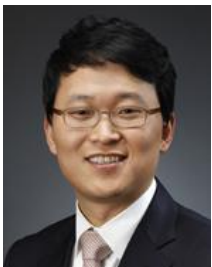


김옥림 외국변호사

중국업체를 대리하여 한국 상장기업 인수 자문

지평은 중국업체를 대리하여 한국 상장기업 인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한국 화장품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진출 자문

지평은 한국 화장품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진출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한국 물류업체의 중국법인을 대리하여 채권분쟁 소송

지평은 한국 물류업체의 중국법인을 대리하여 채권분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영동 외국변호사 장옥염 외국변호사

한국 건축사무소를 대리하여 CM계약분쟁 소송

지평은 한국 건축사무소를 대리하여 CM계약분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염동 외국변호사 장욱염 외국변호사

상해 사무소, 대한무역진흥공사 서안대표처 법률고문으로 위촉

지평 상해 사무소는 대한무역진흥공사 서안대표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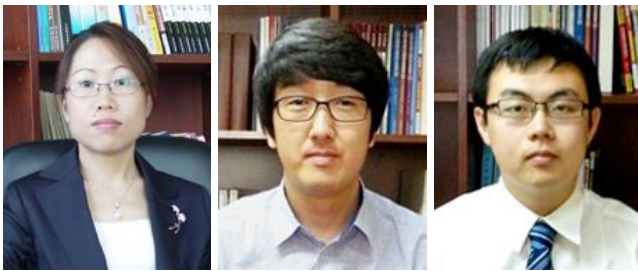


최정식 변호사 · 채광호 외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상해 사무소, 요식업 중국합자법인 법률고문으로 위촉

지평 상해 사무소는 요식업 중국합자법인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영동 외국변호사 채광호 외국변호사 장욱엽 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

롯데시네마를 대리하여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에 영화관 개관 자문

지평은 롯데시네마를 대리하여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에 영화관 개관 관련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엑스포뉴스 - 롯데시네마, 베트남 제24호 나우존관 · 25호 탕롱관 개관\(2016. 4. 27.\)](#)

[담당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BUI Tran Dang Khoa 외국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외국변호사 최규철 전문위원

롯데마트를 대리하여 호치민시 고밥 지점 개점 자문

지평은 롯데마트를 대리하여 호치민시 고밥 지역에 현지 내 12 번째 지점 개점 관련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 롯데마트, 베트남 12호점 문 열어\(2016. 4. 26.\)](#)

[담당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 BUI Tran Dang Khoa 외국변호사 | TRAN Thi Phuong Trang 외국변호사 | 최규철 전문위원

한국거래소의 베트남 · 인도네시아 기업 해외상장 법제 연구 용역 수행

지평은 한국거래소의 베트남 · 인도네시아 기업 해외상장 법제 연구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이행규 변호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 한국거래소, 베트남 · 인도네시아 상장 제도 설명회 개최(2016. 3. 29.)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 권용숙 변호사 ·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 이은영 변호사 | 최유진 변호사 | 반정현 변호사



유동호 외국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
· 하노이 사무소장

■ 해외업무 사례 - 인도네시아 ■

한국거래소의 베트남·인도네시아 기업 해외상장 법제 연구 용역 수행

지평은 한국거래소의 베트남·인도네시아 기업 해외상장 법제 연구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이행규 변호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 한국거래소, 베트남·인도네시아 상장 제도 설명회 개최\(2016. 3. 29.\)](#)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



권용숙 변호사 ·



이은영 변호사



최유진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유동호 외국변호사
· 하노이 사무소장



반기일 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캄보디아 ■

KB금융을 대리하여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뱅킹 사업 진출 관련 자문

지평은 KB금융을 대리하여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뱅킹 사업 진출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헤럴드경제](#) - KB금융, 글로벌 디지털뱅크 '뜨거운 관심'(2016. 6. 14.)
- [문화일보](#) - KB금융, 동남아시아 진출 박차... 캄보디아서 디지털뱅크 서비스(2016. 6. 14.)

[담당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CHEA Somala
외국변호사

국내 IT 회사 캄보디아 자회사의 감사 관련 자문

지평은 국내 IT 회사를 대리하여 캄보디아 자회사의 감사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CHEA Somala
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러시아 ■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딧트 뱅크(KB국민은행 자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소재 'BCC-Moscow Bank LLC' 전체 지분 매각 자문

지평은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딧트 뱅크(KB 국민은행 자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소재 'BCC-Moscow Bank LLC' 전체 지분 매각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건설경제신문 - KB국민은행, 글로벌법인 재정비...러시아서 철수\(2016. 4. 21.\)](#)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외국변호사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은행카드청산기구관리방법 시행



(법무법인 지평 김옥림 외국변호사)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6일, 공동으로 「은행카드청산기구관리방법」(이하 '세칙')을 발표하였고, 해당 세칙은 발표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2015년 4월, 「은행카드청산기구진입관리결정」을 발표하여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의 시행을 계기로 중국 은행카드 결제시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개방되었으며, 마스터카드 등 대형 외국계 카드사의 진출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세칙의 부재로 외국계 카드사의 진출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시장의 기대 속에 세칙은 지난해 7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국무원의 결정 발표 후 1년 만에 시행되었습니다. 세칙의 시행으로 중국의 유니온페이에 이어 제2의 새로운 청산기구의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칙은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청산기구의 설립 신청 요건, 승인 절차를 자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칙에 의하면 청산기구의 자본금은 최소 10억 위안으로 자금 출처에 대하여서도 출자자의 자기자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청산기구의 경영진에 대하여서도 50% 이상의 이사(이사장과 부이사장 포함)와 모든 고위 관리직에 대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은행, 지불 또는 청산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칙에 의하면 청산기구의 승인 절차는 준비 단계와 개업 단계로 2단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준비 단계에서의 승인을 받아 준비 작업을 완료하면 다시 개업 신청을 하여 개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 작업은 1년 내에 완료를 원칙으로 하나, 특수한 경우 인

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 승인을 받으면 6개월 내에 개업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칙의 시행으로 청산기구의 다원화와 나아가 다양한 주체 간의 양적 경쟁 구도를 구축하여 소비자는 더욱 개성화된 다양한 지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은행카드 산업 측면에서도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이 예상됩니다.

■ 해외업무 논단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대법원, 영문만으로 작성된 계약서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 승인



(법무법인 지평 권용숙 변호사 ·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최유진 변호사)

1. 개요

2013년 6월 20일, 인도네시아의 제1심 법원(West Jakarta District Court)은 인도네시아 법인(PT. Bangun Karya Pratama)과 미국 법인(Nine AM Ltd.)이 영문만으로 작성한 대출약정서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2013년 6월 20일 선고, 사건번호 No.451/Pdt.G/2012/PN.Jkt.Bar).

구체적으로 제1심 법원은 문제된 대출약정서가 인도네시아에서 2009년 7월 9일부터 시행된 법률 2009년 제24호(Law No.24 of 2009 concerning Flag, Language and symbol of State and National Anthem, 이하 '인도네시아 언어법')에 포함된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 법인, 개인일 경우 계약이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 대출약정서의 무효를 선언하였습니다. 관련된 세부 내용은 [\[별첨\] 지평 Legal Update\(2013년 11월 18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급심의 판단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항소심 또는 대법원은 1심 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7일 자카르타 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영문만으로 작성된 대출약정서는 여전히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며(2014년 5월 7일 선고, 사건번호 No.48/Pdt/2014/PT.DKI), 이에 불복하여 미국 법인(Nine AM Ltd.)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자카르타 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5년 8월 31일 선고, 사건번호 No.601/K/PDT/2015).

통상적으로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공개하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어떠한 법적 논리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였는지 아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판결은 확정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다만 위증, 거짓 증거, 중복제소 금지, 판사의 명백한 실수 등 중대한 절차 및 내용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 청구는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비록 아직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미국 법인(Nine AM Ltd.)이 재심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기간의 경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재심 청구 기간은 경과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기간 내 재심 청구가 없었다면, 대법원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민사소송법은 영미법계와 달리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므로 향후 언어법이 문제된 다른 사안에서 이번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사점

우선, 인도네시아 법원이 본 사건에 대해 계약서가 무효이므로 대여금 전액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미국 법인(Nine AM)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약정서 상 이자지급의무 기타 계약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규정들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미국 법인(Nine AM)은 이자지급청구 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이 사건에서 대출약정서에 부수하여 체결된 담보계약서(인도네시아어)도 담보계약의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무효로 선언되어 미국 법인(Nine AM)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정적이기는 하나 예컨대 인도네시아측 당사자의 장애 발생하는 채무가 내용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계약의 경우 무효가 선언된다면 그로 인한 타격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상급심에서도 인도네시아어를 채택하지 않은 계약서를 무효로 선언한 이상, 비록 향후 다른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하더라도, 외국계 사업가로서는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인도네시아어 계약서와 영어(또는 한국어)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준거법을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영어(또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영어 또는 한국어만으로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다면 이제라도 이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기존 계약서에 별첨 형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비용이나 추가적인 계약 체결 절차 등에 부담과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위험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추가 계약서 작성은 2009년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소급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이 사건 제1심 판결 이유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달리 계약의 준거법을 인도네시아법이 아닌 타 국가 법률(예컨대, 대한민국 민법 등)로 정한 계약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인도네시아 법원이 여전히 언어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선언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운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해당 사건에서 인도네시아 언어법을 강행법규로 파악하여 강력한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믿는 인도네시아 판사를 만난다면, 예상치 못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인도네시아 언어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언어법은 복수 언어가 사용된 계약의 용어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2월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법률적 구속력 없는 Letter(Non-Binding Letter, 주: 유권해석)을 통해 2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된 경우 인도네시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기준 언어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법률실무는 복수의 언어가 사용되는 혼용 계약서의 경우 영어 등 외국어를 기준언어로 설정한다는 특약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하여 외국어를 기준 언어로 할 경우 인도네시아 당사자로부터 외국어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고 외국어가 우선된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제간 계약에서 영어 등 공용어적 성격을 가진 언어를 기준 언어로 정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이며, 인도네시아 법원이 기준 언어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도 없이

인도네시아어만 기준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법 조계의 중론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인도네시아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되는 계약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향후 상급심에서 인도네시아 언어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더라도 인도네시아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계약서 등이 그러합니다. 특히, 노동법 제57조에 따르면, 만일 2개 이상의 언어가 근로계약서에 사용된 경우 인도네시아어가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공상총국의 「엄중한 불법 및 신용불량 기업리스트 관리 잠행방법」 4월 1일부터 시행

「엄중한 불법 및 신용불량 기업리스트 관리 잠행방법」(이하 '방법')이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리스트는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는바, '엄중한 불법 및 신용불량 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유로는 '부당한 경쟁행위로 2년 내에 3회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허위광고로 2년 내에 3회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5년 내에 2회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9가지로 다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법'에서는 해당 리스트에 기록된 기업들에 대하여 리스트에 기록된 날로부터 '5년 경과 시까지 엄중한 불법 및 신용불량 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유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면 해당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등'의 '명예회복' 절차도 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공시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적법 경영을 촉구하는 데 의미를 두는 한편 엄중한 불법 행위를 행한 기업 및 신용불량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빈발하는 주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적인 결정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모투자펀드 모집행위관리방법 발표

중국 펀드업협회는 「사모투자펀드 모금행위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여 사모펀드의 모집주체, 모집절차, 모집의무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방법'은 사모펀드모금의 기관주체는 일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나 펀드판매기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의 모집절차와 관련하여 우선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사모기관의 기본정보를 홍보하고, 특정 대상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을 특정한 다음, 그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모펀드 상품

을 설명한 후, 마지막 순서로 적격투자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펀드계약을 체결하도록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소비자 관련 공익소송 사법해석 발표

소비자 관련 공익소송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고 성실한 소비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소비자권익보호법」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소비(자)민사공익소송사건 심리 시 적용법률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이하 '해석')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석'은 소비자 권리의 실질적인 구제에 역점을 두고 소비자 공익소송의 원고 자격, 적용 범위, 소비 영역에서의 사회공공이익의 유형화, 관할법원, 원고 처분권의 제한, 공익소송과 사익소송 간의 관계, 청구권 유형 및 책임 부담 방법, 기판력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해외 비정부기구의 중국 경내 활동 관리법 제정

「해외 비정부기구의 중국 경내 활동 관리법」(이하 'NGO관리법')이 4월 28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NGO관리법'은 7장 54개 조항으로 총칙,登記 및 신고, 활동규범, 편의를 위한 조치, 감독 관리, 법률적 책임 및 부칙 등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NGO관리법'에서는 '해외 비정부기구'에 대하여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재단, 사회단체, 싱크탱크 등 비영리성격의 비정부 사회기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NGO관리법'에 의하면 중국은 해외 비정부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한다는 의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현급 이상의 정부 관련 부서에 해외 비정부기구를 위한 정책자문, 활동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베트남 ■

베트남 건설사 등급 분류

1. 건설 관련 업종의 등급 분류

베트남 정부가 2015년 6월 18일 제정한 건설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시행령(Decree 59/2015/NĐ-CP, 이하 'Decree 59')에서는 인력 규모와 경력에 따라 건설 관련 업종을 각각 3등급(Class I, II, III)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인허가(순수국내법인의 경우에는 기업등록증,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투자등록증과 기업등록증)상의 목적사업은 단순히 건설업 또는 관련 업종명만 등록되지만, 각 회사의 인력 규모와 경력에 따라 해당 등급에 대한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 인증서 발급 권한은 각 업종마다 1급(Class I)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가 관할하고, 2급(Class II)과 3급(Class III)은 58개 성(Province) 및 5개 직할시(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켄터) 지방정부의 건설국(Department of Construction)이 관할합니다.

각 등급의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또는 공사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Construction survey(Decree 59 제59조)

- a) Class I: 모든 프로젝트 및 공사 업무 수행 가능
- b) Class II: B그룹(Group-B) 이하의 프로젝트 또는 2등급(Grade II) 이하의 공사 업무 수행 가능
- c) Class III: C그룹(Group-C) 이하의 프로젝트 또는 3등급(Grade III) 이하의 공사 업무 수행 가능

(2) Construction planning consultancy(Decree 59 제60조)

- a) Class I: 모든 프로젝트 수행 가능
- b) Class II: 성(Province), 구(District) 단위의 프로젝트, 2등급(Grade II) 이하의 도시구역 또는 성(Province) 내 특정 지역과 농어촌 지역 계획 업무 가능
- c) Class III: 구(District) 단위의 프로젝트, 4등급(Grade IV) 이하의 도시구역 또는 구(District) 내 특정 지역과 농어촌 지역 계획 업무 가능

(3) Construction design and construction design assessment(Decree 59 제61조)

- a) Class I: 모든 공사 업무 수행 가능
- b) Class II: 2등급(Grade II) 이하의 공사 업무 수행 가능
- c) Class III: 3등급(Grade III) 이하의 공사 업무 수행 가능

(4) Construction project planning and assessment(Decree 59 제62조)

- a) Class I: 모든 프로젝트 수행 가능
- b) Class II: B그룹(Group-B) 이하의 프로젝트 수행 가능
- b) Class III: C그룹(Group-C) 이하의 프로젝트 및 건설 경제-기술 보고서(construction economic-technical reports) 수행 가능

(5) 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Decree 59 제63조)

- a) Class I: 모든 프로젝트 수행 가능
- b) Class II: B그룹(Group-B) 이하의 프로젝트 수행 가능
- c) Class III: C그룹(Group-C) 이하의 프로젝트 및 건설 경제-기술 보고서(construction economic-technical reports)만을 필요로 하는 공사 업무 수행 가능

(6) Execution of construction works(Decree 59 제65조)

- a) Class I: 모든 공사 업무 수행 가능
- b) Class II: 2등급(Grade II) 이하의 공사 업무 수행 가능
- b) Class III: 3등급(Grade III) 이하의 공사 업무 수행 가능

(7)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inspection(Decree 59 제66조)

- a) Class I: 3등급(Grade III) 이하의 공사 업무 수행 가능
- b) Class II: 2등급(Grade II) 이하의 공사 업무 수행 가능
- c) Class III: 3등급(Grade III) 이하의 공사 업무 수행 가능

(8) Construction cost management consultancy(Decree 59 제67조)

- a) Class I: 모든 프로젝트 수행 가능
- b) Class II: B그룹(Group-B) 이하의 프로젝트 수행 가능
- c) Class III: C그룹(Group-C) 이하의 프로젝트 및 건설 경제-기술 보고서(construction economic-technical reports)만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수행 가능

2. 건설업(Execution of Construction Works)의 등급별 요건

Class I	Class II	Class III
1등급 공사 감독관 자격자 3인 이상 채용	2등급 공사 감독관 자격자 2인 이상 채용	3등급 공사 감독관 자격자 1인 이상 채용
관리자는 건설 분야 학사 학위자는 3년 이상, 전문대 졸업자는 5년 이상 경력 보유	관리자는 건설 분야에서 학사 학위자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 3년 이상 경력 보유	관리자는 건설 분야에서 전문 직업 능력 보유
품질 관리 및 직업안전 관리 담당자 15인 이상 채용	품질 관리 및 직업안전 관리 담당자 10인 이상 채용	품질 관리 및 직업안전 관리 담당자 5인 이상 채용
건설기술 자격증 보유자 30인 이상 채용	건설기술 자격증 보유자 20인 이상 채용	건설기술 자격증 보유자 5인 이상 채용
적정한 기계설비 조달 능력 보유	-	-
1급 공사 1건 이상 또는 2급 공사 2건 이상 실적 보유	2급 공사 1건 이상 또는 3급 공사 2건 이상 실적 보유	-

3. 프로젝트의 등급(Group) 구분(Decree 59 Appendix 1)

No.	Construction project type	Total investment
I	PROJECT OF NATIONAL IMPORTANCE	
	1. By total investment: Project funded by public investment capital	≥ VND 10,000 billion
	2. By degree of impact on environment or potential serious risks to the environment, including:	Regardless of total investment

No.	Construction project type	Total investment
	a) Nuclear power plants; b) Use of following land types requesting for changes in land use purposes: national parks, nature reserves, protected landscape areas, research and scientific experiment forests with at least 50 hectares in area; riverhead protective forests with at least 50 hectares in area; windbreak, sand break, surf break, , sea encroachment, environment protective forests with at least 500 hectares in area; or production forests with at least 1,000 hectares in area; c) Use of paddy land plot that is cultivated for at least two crops and requested for changes in land use purposes with at least 500 hectares in area; d) Relocation of at least 20,000 emigrants in mountainous region or at least 50,000 emigrants in other regions; dd) Projects that require special polices dec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II	GROUP A	
II.1	1. Projects located in administrative divisions having special national vestige. 2. Projects located in essential administrative divisions to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as prescribed. 3. Project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and state secrets. 4. Projects of manufacturing of noxious agents or explosives. 5. Projects of industrial zone or processing and exporting zone infrastructure.	Regardless of total investment
II.2	1. Transportation, including bridges, sea ports, river ports, airports, railway and highway. 2. Electrical industry. 3. Petroleum extraction. 4. Chemical, fertilizer, cement. 5. Mechanical manufacture, metallurgy.	≥ VND 2,300 billion

No.	Construction project type	Total investment
	6. Mineral extraction and processing. 7. Residential area construction.	
II.3	1. Transportation projects, excluding projects prescribed in Point 1 of Section II.2 2. Irrigation. 3. Water supply and drainage and infrastructural constructions. 4. Electrical engineering. 5. Communications or electronics equipment manufacture. 6. Pharmaceutical chemistry. 7. Material manufacture, excluding projects prescribed in Point 4 of Section II.2 8. Mechanical construction, excluding projects prescribed in Point 5 of Section II.2 9. Post and telecommunications.	≥ VND 1,500 billion
II.4	1. Agricultural production, forestry, aquaculture. 2. National parks, wildlife sanctuary. 3. New urban area infrastructure. 4. Industry, excluding projects of industrial field prescribed in Sections I.1, I.2 and I.3.	≥ VND 1,000 billion
II.5	1. Health, culture, education; 2. Scientific research, computing, broadcast; 3. Depot; 4. Tourism, sports; 5. Civil construction, excluding residential construction prescribed in Section II.2.	≥ VND 800 billion
III	GROUP B	
III.1	Projects prescribed in Section II.2	From VND 12 billion to VND 2,300 billion
III.2	Projects prescribed in Section II.3	From VND 80 billion to VND 1,500 billion
III.3	Projects prescribed in Section II.4	From VND 60 billion to VND 1,000 billion
III.4	Projects prescribed in Section II.5	From VND 45 billion to VND 800 billion

No.	Construction project type	Total investment
IV	GROUP C	
IV.1	Projects prescribed in Section II.2	< VND 120 billion
IV.2	Projects prescribed in Section II.3	< VND 80 billion
IV.3	Projects prescribed in Section II.4	< VND 60 billion
IV.4	Projects prescribed in Section II.5	< VND 45 billion

4. 공사 등급(Grade) 구분

베트남 건설부가 2016년 3월 10일 제정한 Circular 03/2016/TT-BXD Appendix 1 및 Appendix 2에서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분하여 Special, Grade I, Grade II, Grade III, Grade IV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5. 위반 시 제재조치

각 공사 관련 업체가 자신의 등급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초월하여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베트남 동화 3천만 동 내지 4천만 동(약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베트남 정부가 2013년 10월 10일 제정한 Decree 121/2013/NĐ-CP 제21조 제3항).

■ 최신 해외정보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 등록 의무 절차에 관한 법무부 규정 발효

2016년 2월 24일 법무부는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 등록의 절차와 요건에 관한 법무부 규정 2016년 제8호를 발효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라이선스 계약을 의무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리청(Directorate General of IP, "DGIP")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상표법 제43조에 따라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은 DGIP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각 법률에 등록 의무에 대한 규정만 산발적으로 존재하였으나 법무부 규정 2016년 제8호의 발효에 따라 등록 절차 및 등록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1. 등록 신청인

법무부 규정 2016년 제8호에 따라 Licensor(권리자) 또는 Licensee(사용권자) 또는 대리인(Proxy)이 라이선스 계약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 상표, 실용디자인,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영업 비밀 등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등록함에 적용되며 등록 신청서는 법무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DGIP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요건

법무부에 직접 등록하거나 DGIP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준비 요건은 동일합니다.

- 라이선스 계약 사본

- 유효한 특허, 상표, 실용디자인, 집적회로 또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 비밀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 사본
- 등록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
- 지적재산권이 유효하고, 국익에 위배되지 않으며, 기술 발전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법률, 법규 및 공공질서에 위반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신청인의 진술서
- 등록 수수료 납부 영수증 원본

3. 심사 절차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DGIP는 요건 충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요건이 모두 제출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절차는 종료됩니다. 만일,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10일을 추가적으로 허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DGIP는 신청을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4. 등록 기간

라이선스 계약을 등록하면 이는 5년간 유효하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재신청하는 경우 등록되는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하여야 합니다.

5. 적용시기

법무부 규정 2016년 제8호 발효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라이선스 계약은 위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록되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39/2016 발표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er of Finance)는 최근 세수 확보 및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2016년 3월 23일 재무부령 No. 39/PMK.03/2016(이하, 재무부령 39/2016)을 발표하였습니다. **재무부령 39/2016에 따르면, 현재 약 23개의 인도네시아의 신용카드 발급회사는 고객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국세청장(Directorate General of Taxes)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용카드 발급회사에게 고객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여집니다.**

신용카드 발급회사는 고객의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전자 정보의 형태로 매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거나 또는 국세청장에 직접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2016년 5월 31일까지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재무부령 39/2016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회사의 의무는 인도네시아 은행법에 따른 개인예금 정보 보호와 관련된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소지자의 개인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고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소지자의 소비 내역이 연간 신고하는 소득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업계 및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별표 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 재무부령 39/2016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 발급회사]

1. Pan Indonesia Bank, Ltd. Tbk.
2. PT Bank ANZ Indonesia
3. PT Bank Bukopin, Tbk.
4. PT Bank Central Asia, Tbk.

5. PT Bank CIMB Niaga, Tbk.
6. PT Bank Danamon Indonesia, Tbk.
7. PT Bank International MNC
8. PT Bank ICBC Indonesia
9. PT Bank Maybank Indonesia, Tbk.
10. PT Bank Mandiri (Persero), Tbk.
11. PT Bank Mega, Tbk.
12. PT Bank Negara Indonesia 1946 (Persero), Tbk.
13. PT Bank Negara Indonesia Syariah
14. PT Bank OCBC NISP, Tbk.
15. PT Bank Permata, Tbk.
16. PT Bank Rakyat Indonesia (Persero), Tbk.
17. PT Bank Sinarmas
18. PT Bank UOB Indonesia
19. Standard Chartered Bank
20. The 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
21. PT Bank QNB Indonesia
22. Citibank N.A
23. PT AEON Credit Services

[별표 2 : 신용 카드 발급회사가 국세청장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1. 은행명(은행 또는 신용 카드 발급업자)
2. 신용 카드와 연결된 계좌 번호
3. 판매자(merchant) ID
4. 판매자(merchant) 상호
5. 신용카드 소지자 이름

6. 신용카드 소지자의 주소
7. 신용카드 소지자 신분증 번호(인도네시아인의 경우NIK, 외국인의 경우 여권 번호)
8. 신용카드 소지자 세적등록번호(NPWP)
9. 신용카드 결제 월
10. 신용카드 거래일의 날짜
11. 신용카드 거래 관련 세부사항세부 사항
12. 신용카드 거래 금액(인도네시아 루피아)
13. 신용카드 한도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일본 정부 성장전략

2016년 5월 19일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명목 GDP 600조 엔을 위한 성장전략 ("일본재흥전략 2016"[안])을 위해 산업경쟁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회의는 일본경제재생본부 하 일본의 산업경쟁력과 국제적 전개를 위한 성장전략 구현화와 추진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의장인 일본총리의 소집으로 개최됩니다.

명목 GDP 600조 엔을 향한 성장전략("일본재흥전략 2016" 개요)[안]

1. 600조 엔을 위한 "관민전략 프로젝트 10"(가칭)

1-1 : 새로운 유망 성장시장 창출

- ① 제4차 산업혁명(Society5.0)(IoT·빅데이터·AI·로봇)[부가가치 창출 : 30조 엔(2020)]
- ② 세계 최첨단 건강입국으로[시장규모 : 16조 엔(2011)→26조 엔(2020)]
- ③ 환경에너지 제약 극복과 투자확대[에너지 관련 투자 : 18조 엔(2014)→28조 엔(2030)]
- ④ 스포츠 성장 산업화[시장규모 : 5.5조 엔(2015)→15조 엔 (2025)]
- ⑤ 기존 주택 유통·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시장규모 : 11조 엔(2013)→20조 엔(2025)]

1-2 : 로컬 아베노믹스 심화

- ⑥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부가가치 : 343조 엔(2014)→410조 엔(2020)]
- ⑦ 중견·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혁신
- ⑧ 공세의 농림수산업 전개와 수출촉진[6차산업시장 : 5.1조 엔(2014)→10조 엔(2020)]
- ⑨ 관광입국 실현[외국인 여행소비액 : 3.5조 엔(2015)→8조 엔(2020), 15조 엔(2030)]

1-3 : 국내 소비 심리 환기

- ⑩ 관민제휴에 의한 소비 심리 환기책 등

2. 생산성 혁명을 실현하는 규제·제도 개혁

- 새로운 규제·제도 개혁 메커니즘 도입
- 국가전략특구 활용(구조개혁 돌파구)
-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강화
- PPP/PFI 등에 의한 공약 서비스·자산의 민간개방 확대[약 2.4조 엔(2013~2014)→약 21조 엔(2013~2022)]

3. 혁신 창출·도전 정신이 넘치는 인재 창출

- 혁신, 벤처 창출력 강화
- 경제성장을 개척하는 인재 육성·확보
- 성장제약 타파를 위한 고용환경 정비, 여성의 활약 등 다양한 일꾼 참가

4. 해외 성장시장 포섭

- TPP를 계기로 한 중견·중소기업 해외전개 지원[13.8조 엔(2013)→25.2조 엔(2020)]
- 인프라시스템 수출 확대[약 16조 엔(2013)→약 30조 엔(2020)]
- 대내직접투자 유치 강화[23.2조 엔(2014)→약 35조 엔(2020)]
- 경제제휴협정, 투자협정 체결 추진

5. 개혁 모멘텀 활용

- “개혁2020” 프로젝트 추진

[출처 : 일본 수상관저 정책회의]